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문공보관 황현아

전화 061-725-4310 / 팩스 061-725-4315

보도자료  
2020. 12. 23. (수)

### 제 목 아기 유기치사 후 사체 냉동고 방치 사건 구속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2020. 12. 23. 광주지검 순천지청(형사2부장 김준섭)은 2018. 10. 하순경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하여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유기한 친모를 구속기소하였음
- 다른 두 남매의 복지를 위해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청구를 할 예정임

####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 피고인

- A○○(41세)

##### ● 공소사실 요지

- '18. 10. 말경 생후 2개월 B○○를 방치하여 사망케 하고, 사체를 냉동실에 2년간 은닉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 '20. 8.경부터 C○○에 대해, '18. 8.경부터 D○○에 대해 쓰레기 가득한 집에 방치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유사판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 ▶ 생후 3개월인 피해자를 혼자 두고 15시간 후 돌아왔는데 사망하였다면 유기치사
- ▶ 쓰레기 등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했다면 아동방임

## 2 관련 조치

- 사망한 B○○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절차를 이행할 예정
- 다른 두 남매들의 복지를 위해,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C○○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권상실 청구를,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D○○ 관련하여 출생신고와 피고인의 친권상실 청구를 순차 진행할 계획
- 친권상실 청구 사유
  - ① 피고인은 죽은 자식의 시신을 냉장고에 2년간 보관하고, 생존한 자녀들을 쓰레기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여 친권을 남용, ② 피해아동 조부가 양육의사를 표시, ③ 피고인이 양육준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친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 고려
- 관련 규정 및 판례

### ▶ 친권상실 규정

-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 친권회복 규정

- 민법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8스520 결정).